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침서 제정 및 업무적용 알림

최근 중·대형 건설현장은 안전한 작업절차 및 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신기술·신공법 채택과 하도급 체제 중심의 운영 및 숙련 근로자 부족 등으로 인해 각 단위 작업 실행 단계에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공단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 선정 및 공법 등이 결정되는 실행 단계에서 시행될 수 있고 현장 변화 상황에 상시 부응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체계화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침서」를 제정하였으며 2017.1.1 부로 제출되는 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업무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작성 지침서 주요 내용>

-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작업공사 종류별 주요 작성대상 작업 중점**으로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전 공정 위험요인에 대한 백화점식 계획서 작성 지양하고 핵심 위험 작업만 대책 수립), 주요 작성대상 작업별로 수립하여야 하는 세부 안전대책 내용 제시 (☞ 안전대책은 서술식·나열식 작성을 지양하고 작업 계획도 등에 도식화 하는 방법으로 작성)
- 나. 최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주요 작성대상 작업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핵심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만을 간략하게 첨부
- 다. 안전보건관리계획 부문에 현장에서 시공과 연계된 위험성평가 P-D-C-A 실행이 가능토록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축 시의 위험성평가 조직운영 계획 및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을 요구
- 라.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는 계획서 대상공사별 작업공사 종류란의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유해·위험작업목록을 리스트화 하여 첨부 (☞ 기존에 전공정에 대하여 계획 수립 하던 부분을 최초 계획서에서는 '가'항의 핵심 위험작업에 대해서만 대책 수립하고 그 외부분은 예상위험작업목록만 누락없이 리스트화하여 제출하며 향후 공단의 현장 확인시 현장에서 계획 단계의 위험작업 목록을 위험성평가를 통한 상시 유해·위험방지 활동으로 주요 위험요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적정 여부를 판정)

따라서 향후 계획서 대상공사를 착공할 경우에는 동 작성 지침서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요구 내용과 위험성평가 실행을 통한 유해·위험방지 활동계획 수립 요구 내용 등을 참고하여 각 건설현장 여건에 부응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침서」 (별첨)